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004호, 2022.10.18. 공포, 2023. 4.19. 시행)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기설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
(현행 제6조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6조(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</u> <u>점검을 하는 전기설비) ① 법</u> <u>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</u> <u>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 중 다</u> <u>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(그</u> <u>부속설비를 포함한다)에 설치한</u> <u>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</u> <u>을 해야 한다.</u>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 <u>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</u> <u>공동주택</u> 2.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 <u>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</u> <u>급받은 가설건축물</u>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<u>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</u> <u>에 따른 근린생활시설</u> 4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<u>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</u> <u>임대주택과 「공공주택 특별</u> <u>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</u> <u>공공임대주택</u> 5.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 <u>른 농지</u>	<u><삭 제></u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용
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
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
안전공사(이하 “안전공사”라 한
다)에 사용전점검을 신청하여
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을
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82